

[별표 7]<개정 1986.6.19>

종합휴양업시설기준(제15조관련)

1. 공통기준

가. 면적은 165,000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또는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것.

- (1) 숙박시설(숙박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여관 갑등급 시설기준이상)
- (2) 음식점시설(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한 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이상)

2. 민속문화자원 소개의 경우

- 가.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와가)이 20동이상 있을 것.
- 나.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을 것.
- 다. 민속가무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갖추어져 있을 것.
- 라. 3종이상의 민속생활도구 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장소가 있을 것.
- 마.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3. 스키장의 경우

- 가. 길이 500미터 폭 30미터이상의 스톱프를 2개이상 갖추어 것.
- 나. 500미터이상의 리프트를 2개이상 설치할 것.
- 다. 스키장내 구조물은 이용자의 안전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시 보호대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라. 응급처치 설비를 갖추어 것.

4. 휴양시설의 경우

다음에 기재하는 해수욕장·수련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 및 운동오락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것.

가. 해수욕장

- (1)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공중화장실·탈의장 및 휴게시설등이 있을 것.
- (2) 인명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치설비등의 시설이 있을 것.
- (3) 담수욕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수련장

- (1) 수렵대상조수가 2종이상 있을 것.
- (2) 수렵에 필요한 클립하우스가 있을 것.
- (3) 수렵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엽총 및 엽견이 있을 것.

다. 동물원

- (1) 50종이상의 동물을 보유할 것.
- (2)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라. 식물원

- (1)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2) 식물종류수는 1,000종이상일 것.
- (3)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마. 수족관

- (1)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2) 어종수(어류외의 것은 제외한다)는 100종이상일 것.
- (3)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바. 운동오락시설

- (1) 축구장·야구장·배구장·농구장·정구장·탁구장·수영장 및 승마장등의 운동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2) 탑승좌석 10석이상의 회전형관람차·모노레일차·관람용기관차·회전목마·케이블카·유람차 및 유람선등의 오락 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